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6년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안전부)

2026. 7.

책임자	활동안전부	부장 허성광	TEL: 02-6959-7121	FAX: 02-6430-0904
담당자	활동안전부	과장 강정현	TEL: 02-6959-7124	

1

과업개요

□ 과업명

- 2026년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 추진 목적

- 디지털·재난 안전 등 다변화된 위험 대처 능력(Risk Literacy) 강화를 통한 실천적 대응 역량 제고
-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안전 복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생활 속 안전의식 내재화 및 주도적인 안전 문화 확산
- 현장 활용도를 높인 맞춤형 지도 교안 개발을 통해 안전교육의 현장 실행력 교육 품질 제고

□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13일 (금)
- (기초금액)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 VAT 포함)

□ 과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1	안전교육콘텐츠/교안 개발·기획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과정별 원고·스토리보드 기획 - 교육과정 7종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및 원고, 교안 - 강사 및 자문위원 섭외	
2	영상 콘텐츠(7종) 및 교안 제작	○ 교육 영상 촬영 및 모션그래픽 제작, 편집 등 영상제작 일체 ○ 콘텐츠 오류 및 편집 등 품질관리	
3	사업 수행 관리	○ 영상 유지보수, 과업 보고, 강사·자문비 지급 등 행정 전반	

□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7종)

연번	교육명	교육과정(안)	교육대상	시간
1	위기대응 레벨업! 청소년시설 재난안전관리	·청소년시설 특성 및 재난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체계 이해(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종사자 역할 ·상황별 대응요령 (화재, 자연재난 등) ·사례로 배우는 재난대응 및 퀴즈!	종사자	1h
2	화재제로(ZERO!) 청소년시설 소방안전 실무	·소방안전 법적기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오작동 예방 및 핵심 점검 요소 ·소방시설의 이해 ·초기대응 행동요령 및 안전퀴즈!	종사자	1h
3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천과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 ·위험성평가 실무(법적근거, 실시시기, 단계별 절차, 위험성평가 방법)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준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준비 등	종사자	1h
4	한번의 클릭, 평생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청소년활동 운영 시 유의사항 (수련활동 시 수집하는 민감정보, 이미지 초상권 가이드라인)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사고 (한눈정보참고) ·안전한 디지털 흔적관리 (종사자: 관리시스템보안 및 동의서작성, 청소년: SNS사진 업로드 시 타인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등)	종사자 청소년	1h
5	AI와 함께 성장하기, 디지털 시민성 클래스	·AI시대의 변화 및 생성형 AI 제대로 활용하기 ·AI와 개인정보 및 저작권 ·디지털 시민성과 책임 ·참여형 퀴즈	종사자 청소년	1h
6	따로 또 같이 안전하게! 야외 활동 및 다중 밀집 위험 대처법	·안전사고는 왜 발생할까? ·야외활동 안전수칙 및 안전지대 확보법 ·다중밀집 위험의 이해 및 안전, 대피요령 ·응급상황 대처법 ·안전약속 퀴즈	종사자 청소년	1h
7	청소년 안전 라이딩! 자전거부터 킥보드까지 슬기로운 도로주행	·자전거 및 킥보드 사고 사례 ·픽시자전거·킥보드 이용법과 법규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수칙 ·PM 주행의 정석(도로교통법)안내 ·안전한 이용법 및 안전 퀴즈	청소년	0.5h

※ 교육시간 및 제작방법은 제작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제작 계약요청 및 업체 선정						
[2단계] 강의콘텐츠 제작 협의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단계] 강의 교안 및 그래픽제작 강사섭외 및 콘텐츠 촬영						
[4단계] 강의콘텐츠 편집 및 검수 각 과정별 교안 제작						
[5단계] 신규 강의콘텐츠 시범 적용						
[6단계] 과업 검수 및 결과보고						

□ (추진절차별 세부내용)

○ [1·2단계] 교육 콘텐츠 제작 협의

- ① 교육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및 제작기법 제시
- ② 강사섭외, 강의콘텐츠 촬영 및 편집, 그래픽모션형 콘텐츠 제작, 검수 일정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관한 협의
- ③ 콘텐츠 적용 시점까지의 과정 중 필요 사항에 대한 전반적 논의

○ [3단계] 강사 섭외 및 강의콘텐츠 촬영, 그래픽모션 제작

- ① 교육 영상의 대분류 제목, 총 재생시간, 각 영상별 소제목 등 분류표 제공 및 콘텐츠 차시별 러닝타임, 주요 내용등을 기재한 과정 개요서 제공
- ② 교육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기획 및 강사진 섭외
 - 강사 촬영 건은 강의콘텐츠 계약상대자에서 우선 제안하며, 진흥원과 협의 후 선정
 - 과정별 강의 내용에 맞는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 구성
 - 과정별 강의교안(PPT) 및 스크립트 제작
- ③ 강의콘텐츠 저작권, 사용기간 등 계약체결 후 촬영 또는 그래픽 제작
 - 콘텐츠 저작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강사촬영분의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사용함. 추가 활용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강사와 협의 후 진행

○ [4단계] 강의콘텐츠 편집 및 검수, 각 과정별 교안 제작

- ① 촬영된 강의콘텐츠에 intro 및 outro 영상, 고급CG 및 자막 제작, 나레이션 녹음, 강의내용 요약 및 퀴즈 등을 포함하는 편집 작업 일체

영상 제작 사양

- 파일 확장자: mp4 형식
- 해상도: 16:9 비율, 가로 974px, 세로 548px 이상으로 제작
- 영상 인코딩 시 최대 비트 전송률이 1~1.5Kbps 되도록 제작 (pc기준)
- 용량: 영상콘텐츠 개당 5GB 미만
- 그 외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편집·작업 등 일체

- ②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진흥원 업무 담당자와 강의 교수자에게 검토, 수정, 보완 작업 진행

※ 교육 콘텐츠 제작 주 과정은 계약상대자에서 담당하지만, 진흥원 업무 담당자가 촬영 등 과업 수행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음

- ③ 각 과정별 교수학습자료 제작 (콘텐츠 보며 참고할 교재)

- ④ 최종 자료에 대해 진흥원 업무 담당자 검수 후 승인

○ [5단계] 강의콘텐츠 시범적용

- ①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KOSE) 내 개설 및 구동 확인

○ [6단계] 과업 검수 및 결과보고

□ (추진체계 및 역할)

- (진 흥 원) 교육과정 기획, 강사 섭외 지원, 제작물 검수
- (계약상대자) 교육커리큘럼 구성기획, 강사 섭외, 영상 콘텐츠(7종) 제작납품

(진 흥 원) 콘텐츠 제작 지원	■ 추진내용 협의, 강사(자문위원) 섭외 지원, 제작내용 검수 등
(계약상대자) 제작 전반 및 사후작업, 행정	■ (기획) 콘텐츠 기획, 교육영상 시나리오 구성, 강사 섭외(강사비지급) ■ (촬영·편집) 효과(자막, CG 등), 화면전환 영상 촬영제작 및 삽입(인·아웃트로, 차시엔딩 등), 영상 내 녹음 사운드 밸런스 조정 등 ■ 강사 교육자료(PT등) 취합·제출, 운영비용 집행 등

□ (교육과정 개발관리)

-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하여 내용 검토를 진행할 내·외부 검토진 운영
 - 각 콘텐츠 주제별 교안 및 원고 작성을 위한 전문가 1인 이상 필요
 - 원고 집필, 스토리보드 작성 등 단계별 진행하며, 내용의 정확성 및 구성·설계의 적절성 등 콘텐츠 전반에 걸친 검토 실시
 - 검토 단계에서 도출되는 검토 의견, 수정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서 진흥원과 협의하여 수정 및 반영

□ (화면설계)

- 원고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하고, 사례 구성 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안을 제시, 전문가와의 검토·협의
- 화면 구성 시 전체 교육 콘텐츠에 걸쳐 구조, 스토리 흐름, 색감, 그래픽 스타일 등에 있어 통일성 유지 (시각적·내용적 일관성 고려)

□ (콘텐츠·교안 제작)

- 특정 웹 브라우저 및 버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개발
-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업로드 사양 기준에 맞추어 제작
- 동적 및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하고, 5종 브라우저 (Win10 Edge, Firefox, Opera, Safari, Chrome, 네이버 웨일 등) 이상 지원하여야 함
- 콘텐츠, 온라인 서식 파일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및 웹 콘텐츠 접근성(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동영상별 자막 제공 필수
- 콘텐츠 개발에 사용되는 동영상,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직접 개발하고, 개발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을 확보하여 활용
- 콘텐츠 개발 후 진흥원의 교육시스템 포팅까지 업무 수행
-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몰입도 및 이해도 제고한 교안 제작
- 복잡한 안전개념 및 대응 절차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시각화

□ 과업 보고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 실행 일정(안) 및 과업 수행인력 등)
 - 결과보고: 2026년 11월 13일
- 정기보고(주간/월간)
 - 교안 및 스토리보드, 강사(자문위원) 섭외, 영상제작 진행 현황, 사업 관리 등
- 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반드시
선 보고 후 수행
 - (수시)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최종 성과물 제출

- 완료(준공) 보고
 - 보고시점 : 과업 100% 완료시점
 - 보고기한 : 2026년 11월 13일
 - 보고방법 : 문서로 제출(보고)
 - 제출사항 :
 - 온라인 콘텐츠(7종) 제작 용역 결과보고 1부
 - 제작 콘텐츠 (7종) 원본 파일(mp4 등)
 - 교수학습자료(교안) (7종) 원본 파일(PDF, PPT, HWP 등)
 - ※ 디자인 작업물은 편집 가능한 파일(ai, psd 등) 포함
 - ※ 영상 작업물은 원본, 썸네일 원본 등 포함
 - ※ 문서 작업물은 편집가능한 파일(hwp, doc ppt) 포함

□ 과업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흥원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한다.
- 본 과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등이 필요할 시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따른다.

□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관련 제약사항 준수

- 본 사업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 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콘텐츠에 포함된 원고,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 파악 및 조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침해로 인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진흥원에 배상해야 한다.

□ 과업 전담인력 구성

☑ 인력 구성 권고안				
구분	인원	경력	업무	비고
총괄 PM	1명	10년 이상	사업 총괄	상시 전담*
교육과정 기획자 스토리보드 구성	2명	5년 이상	교육 운영 기획 교육과정 교안 및 스토리보드 구성	
디자이너	1명	5년 이상	콘텐츠 그래픽 디자인	
영상·사진 촬영자	1명	5년 이상	영상촬영	

* 만약 총 5명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1인)를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과업수행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등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중 진흥원이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명확하게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단,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수에 7일을 추가하여 참여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진흥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한다.

□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내용 또는 추진 방법이 사전에 합의한 과업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진흥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작·공급하는 모든 산출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진흥원은 위의 권리상 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 또는 감독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사업 종료 후 콘텐츠 사용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대응 및 배상한다.
- 사업 추진 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진흥원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조치 한다.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이행내용이 진흥원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진흥원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운영 등 과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사업 목적 및 취지, 사업방향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급인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진흥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본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SNS 게시 콘텐츠 중 상용 콘텐츠 및 상용폰트 사용으로 발생한 소송 청구된 경우 해당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